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6년 4월 14일

발 의 자 : 이필용 의원의 7인

□ 제안이유

- 이 조례의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 등 3개협의회에 부의장 직을 신설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에 부의장 1인을 두어 의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함.
(안 제9조제1항, 안 제13조제1항, 안 제17조제1항)
- ※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공동의장(도지사와 민간대표자 각1인)을 두고 있어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여도 회의운영에 지장이 없음.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중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중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장중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지역혁신협의회	(현행과 같음)
제 9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②~④ (생략)	제 9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~④ (현행과 같음)
제4장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	(현행과 같음)
제 13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②~③ (생략)	제 13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~③ (생략) (현행과 같음)
제5장 삶의질향상협의회	(현행과 같음)
제 17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②~③(생략)	제 17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~③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

□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제28조 (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) ①시·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시·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시·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⑤시·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시·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
⑦2 이상의 시·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